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12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부패방지법에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 하는 경우 20세 이상 국민의 300인 이상 연서로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가 가능함에 따라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.

2. 주요골자

주민감사 청구에 있어 감사청구 주민수를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"**60분의1**" 을 "**200명**" 으로 조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치 참여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함이며, 동조례 제2조에서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"**사무에 대하여**" 를 "**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**" 로 하여 지방자치법령에 있는 내용대로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에 있음.

3. 내 용 : 붙 임

4. 참고사항

○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

○ 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**"사무에 대하여"** 를 **"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"** 로 하고, **"청구하는 경우"** 를 **"청구하고자 할 때에는"** 으로, **"20세 이상 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"60분의1" 을 "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200명"**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
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 성주군과 성주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**사무에 대하여**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**청구하는 경우** 연서하여야 하는 **20세이상 주민의 수는 20세이상 주민총수의 60분의1** 이상으로 한다.	제2조(감사청구 주민수)------ ---------- **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**---------- **청구하고자 할 때에는**-------- ---- **주민의 수는 20세 이상 200명**----------.